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8년 10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다수인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향상으로 화재안전기반을 조성하고, 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개정하여 도민 신고의식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가 목적

나. 포상금 등 지급 대상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추가(안 제3조)

다. 포상금 등의 지급(안 제7조)

-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1회당 현금 10만원으로 지급(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 영화관, 학원,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민 안전의식과 신고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단순히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였음.
- 안 제3조는 포상금 등 지급대상을 기존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까지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비상구 관리를 통해 화재예방과 대피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였음.
- 안 제7조는 현행 신고횟수에 따라 현금, 상품권, 소방물품으로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과거의 예로 볼 때 현금지급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던 측면 그리고 화재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필요한 재원은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됨.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18. 8. 31.~'18. 9.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민 안전의식과 신고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